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의원 입법 동향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4회 정례회(11. 7. ~ 12. 15.)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24회 정례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26건

상임 위원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2023. 12. 15.)
의회운영 위원회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석균 의원	원안가결
기획행정 위원회 (2)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윤미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류인출 의원	원안가결
사회문화 위원회 (7)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오섭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박대현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오섭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미희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박윤미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미선 의원	수정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5)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김용복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엄윤순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길로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용복 의원	원안가결

상 임 위 원 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3. 12. 15.)
경제산업 위원회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홍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박대현 의원	원안가결
안전건설 위원회 (7)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운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민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재석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지광천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광천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김용래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찬흥 의원	수정가결
교육 위원회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진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엄기호 의원	원안가결

《참고 : 조례 제정 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24회 정례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3. 12. 15.(금)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공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 요구 조례안의 확정)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조례의 효력 발생)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24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하석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5)
- 공동발의 :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의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교섭단체의 능률적이고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섭단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②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등의 기능을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③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석균 의원

양숙희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발의 : 박윤미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경우 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학교에 한정한다)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고,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로체험 관련 정보 수집·제공,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진로체험기관 발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진로체험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거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등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 : 류인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강원특별자치도정 참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다. ② 강원자치도는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이를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심오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2)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원센터는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생활문화시설의 운영·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생활문화단체 등의 활동 육성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박대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무형문화재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무형문화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심오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2)
- 공동발의 :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 등 전통한복을 개량한 한복을 포함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유명절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 주요행사 및 일상생활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하고, 강원자치도 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강원자치도 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한복 관련 교육 및 홍보, 한복 관련 문화행사 및 학술·연구행사 등 지원, 한복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 육성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⑤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심오섭 의원



원미희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 공동발의 : 엄기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을 통한 관광자원 인프라 확대 및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걷는 길에 맨발로 보행이 가능한 황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길(이하 “맨발 보행로”라 한다)이 포함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하는 걷기행사에 맨발 걷기가 포함됨에 따라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



원미희 의원



엄기호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박윤미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 공동발의 : 박찬홍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7),
이승진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이지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지광천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1),
최규만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2),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유순옥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이영욱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1),
이한영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1),
진중호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양양),
최승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5),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 고령친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 · 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박윤미 의원



박찬홍 의원



유순옥 의원



이승진 의원



이영욱 의원



이지영 의원



이한영 의원



지광천 의원



진중호 의원



최규만 의원



최승순 의원



최종수 의원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이지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공동발의 :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오남용에 대한 전문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지영 의원



전찬성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년후견제도”란 민법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의2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 등 법정 후견제도를 말하고,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 치매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내 성년후견제도 이용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일반상담 및 변호사 등에 의한 전문지식 관련 전문상담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희철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2)

■ 공동발의 : 조성운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를 규정하며, 유아숲체험원보다 작은 규모의 유아동네숲터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숲 교육 시설”이란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하고, “유아동네숲터”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으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체험하며 숲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숲 교육 시설의 규모를 유아숲체험원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유아동네숲터는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유아동네숲터에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김희철 의원



조성운 의원

■ 대표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고성)
 ■ 공동발의 :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김용복 의원	강정호 의원	박호균 의원	엄윤순 의원
			
윤길로 의원	전찬성 의원	최종수 의원	홍성기 의원

홍성기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고성),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진흥사업”이란 연구개발사업, 농촌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농작물 경영진단·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으로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스마트 농업·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국내육성 품종의 유통·마케팅 등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으로 농업인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귀농인·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국제협력사업으로 국제기구·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정부·대학·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마케팅 등을 하는 시·군,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 관계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윤길로 의원



김용복 의원



강정호 의원



박호균 의원



엄윤순 의원



전찬성 의원



최종수 의원



홍성기 의원

■ 대표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고성)
 ■ 공동발의 :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김용복 의원	강정호 의원	박호균 의원	엄윤순 의원
			
윤길로 의원	전찬성 의원	최종수 의원	홍성기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기홍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원주3)

■ 공동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3),
박대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문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2),

최재민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4)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청년인구 유출 대응 및 청년지원정책 확대를 위하여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의 범위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확대되어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의 범위도 확대된다.



김기홍 의원



김용래 의원



문관현 의원



박대현 의원



최재민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 발의 : 박대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에 청년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청년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수상후보자는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로 한다. ④ 수상후보자는 강원자치도 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 및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⑤ 청년대상 수상자를 심사·선정·취소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도지사는 거짓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조성운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1)

■ 공동발의 : 최재석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1)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방동우회는 소방·재난·안전분야 등 각종 예방캠페인 및 홍보활동,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 소방안전교육 및 전문교육강사 양성 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동우회의 지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군에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성운 의원



최재석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최재민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4)



국토교통부가 밝힌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아파트 단지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아파트 단지가 포함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건축 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중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이 층수가 21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변경된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 : 최재석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1)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도로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9조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은 영 제71조에 따른다. ④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지광천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1)

■ 공동발의 :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최재석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등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③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광천 의원



양숙희 의원



최재석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지광천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1)

■ 공동발의 :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최재석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1)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 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정의를 삭제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규정을 삭제하며, 도지사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로관리청·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광천 의원



양숙희 의원



최재석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3) ■ 공동발의 : 권혁열 의원(의장 · 국민의힘 · 강릉4), 한창수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횡성1), 김길수 의원(기획행정위원장 · 국민의힘 · 영월1),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국민의힘 · 고성), 박기영 의원(안전건설위원장 · 국민의힘 · 춘천3),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김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2), 김희철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2), 문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2), 박대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박찬홍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7), 심오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2), 엄기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2),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유순옥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이무철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4), 이영욱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1), 이한영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1),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지광천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1), 최규만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2), 최재민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4),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김기홍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원주3), 심영근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국민의힘 · 삼척2), 정재웅 의원(사회문화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김기철 의원(경제산업위원장 · 국민의힘 · 정선), 박길선 의원(교육위원장 · 국민의힘 · 원주1), 김기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2), 김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1), 류인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박관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1), 박윤미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엄운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원제용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6),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이승진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이지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조성운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1), 진중호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양양), 최승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5), 최재석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1), 하석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5),

■ **공동발의** : 권혁열 의원(의장 · 국민의힘 · 강릉4),

한창수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횡성)

김길수 의원(기획행정위원장 · 국민의힘)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국민의힘 · 고성),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김희철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2),

박대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심오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2).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이무철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추천4)

이하영 의원(경제사언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1)

지관처 **의위**(아저거석위원회 · 국민의회 · 편차1)

치재미 이원(아저거석원원히 · 국민이히 · 위주4)

호선기 이원(노리순사원위회 · 국민이회 · 호처2)

CONFIDENTIAL

심영곤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국민의힘 · 삼척2),

김기철 의원(경제산업위원장 · 국민의힘 · 정선),

김기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2),

류인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

박윤미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원제용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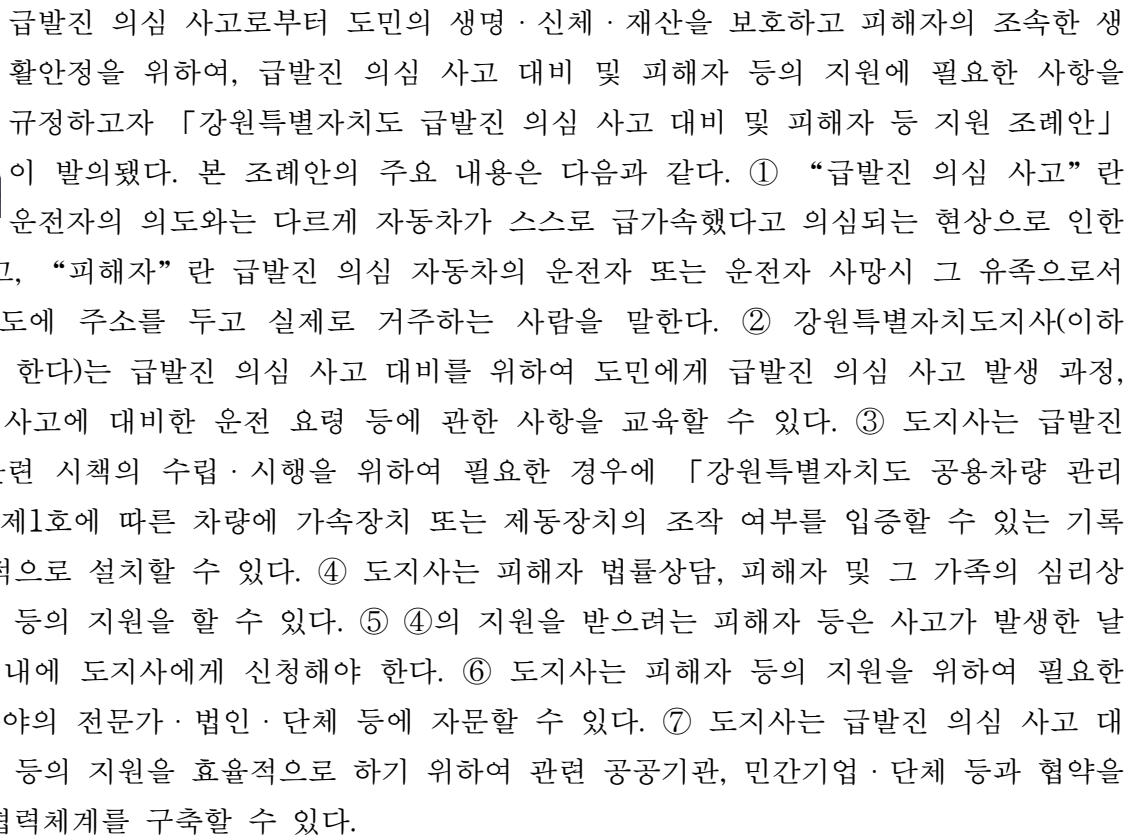
이승진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임미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지조흥 의원(경제사언위원회 · 국민의회 · 약약)

채재석 의원(아저거석원위원회 · 국민이회 · 독해1)

THE TEST SCORES OF THE TEST TAKER



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급발진 의심 사고”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했다고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말하고, “피해자”란 급발진 의심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운전자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민에게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과정,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한 운전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량에 가속장치 또는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피해자 법률상담,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상담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④의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 등은 사고가 발생한 날 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박찬홍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7)

■ 공동발의 : 김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1), 문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2),
박대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박찬홍 의원



김정수 의원



문관현 의원



박대현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이승진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조례 제정 취지 등과 조화되도록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한글날 행사에 관한 규정 신설을 통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공문 · 공보 · 시설 명칭 · 표지판 · 누리집(홈페이지) · 각종 홍보물 등의 서류 및 인터넷 정보를 말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국어 바르게 알기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 발의 : 엄기호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철원2)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설치 대수·위치 및 촬영 범위,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방법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학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에 대하여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교육장 및 학교장은 학교 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시·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및 소방서 등과 상호협력 할 수 있다.